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규정의 시행일 연기〉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083호)

2023.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규정의 시행일 연기	2
※ 참고자료	7
1. 유종별 택배업체 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7

I. 제안경위

2023년 8월 30일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임.

그런데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Ⅲ. 검토의견

1.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규정의 시행일 연기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택배차량으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¹⁾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

1)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21. 4. 1.]

[시행일 : 2021. 4. 8.] 제28조제3호

[시행일: 2024. 1. 1.] 제28조제1호, 제28조제2호

현행	개정안
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2029년----- -----.

현행법 제28조는 「도로교통법」²⁾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³⁾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⁴⁾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규정임.

그 중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에 대하여는 업계의 도입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당시 시행일을 4년이 경과한 2023년 4월 3일로 유예하였고,⁵⁾ 대체차량(LPG·전기)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약 9개월간 추가로 유예하였음.⁶⁾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사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매 보조금 지원은 미흡하여 친환경차량의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5년간 유예하려는 것으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보다 장기간에 걸

-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 5)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활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은 이 법 개정(법률 제17983호, 2021. 4. 1. 공포)을 통해 추가로 규정된 것으로,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6)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120241)」이 의결되었고, 2023년 3월28일 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음.

처 장려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부칙7)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사업 허가·신고를 신규로 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거나 기존의 사업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증차·대폐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사업자들은 현재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5년간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연장하는 것의 법적 실익이 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환경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8)의 경우에도 이전에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
- 7)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여객대상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4.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 8)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차량 보급 정책 기조에 맞추어 택배차량으로 사용되는 1t급 경유트럭(포터·봉고)을 2024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대체할 전기·LPG차량(新을포터·봉고)을 출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시행일 연기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의견)

연장 시기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조사 및 택배업계, 어린이통학차량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⁹⁾을 거쳤으므로, 추가적인 시행일 연장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7

구분	기아 봉고III	현대 포터II
사진		
유종별 판매시기	경유(~'23년말) LPG·전기(판매중)	경유(~'23년말) 전기(판매중)

9) 산업부, 택배업계(CJ·한진·롯데·로젠) 및 자동차제조사(현대자동차) 간담회('22.5~12, 7차례),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단체(유치원연합회·어린이집연합회 등)와의 간담회('23.1.27)를 실시하였으며, 사용제한 시행시기('24.1.1), 대체차량 출시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음(환경부)

※ 참고자료: 유종별 택배업체 차량 및 어린이통학차량 현황

(자료: 환경부)

□ 택배업체(“배” 번호판) 차량 보유 현황

(‘23.10월 기준, 대)

구분	계	경유	휘발유	LPG	CNG	전기
계	69,379	62,827	-	913	-	5,639
서울	9,697	9,045	-	146	-	506
부산	4,296	3,849	-	37	-	410
대구	3,145	2,798	-	47	-	300
인천	5,073	4,631	-	58	-	384
광주	1,817	1,656	-	25	-	136
대전	1,889	1,628	-	24	-	237
울산	1,532	1,432	-	13	-	87
세종	430	394	-	6	-	30
경기	22,413	20,873	-	275	-	1,265
강원	1,776	1,501	-	27	-	248
충북	2,429	2,137	-	19	-	273
충남	2,661	2,370	-	42	-	249
전북	2,004	1,601	-	20	-	383
전남	2,069	1,854	-	42	-	173
경북	3,115	2,725	-	62	-	328
경남	4,334	3,818	-	67	-	449
제주	699	515	-	3	-	181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23.10월 기준, 대)

구분	계	경유	휘발유	LPG	CNG	전기·수소
계	85,568	67,592	73	17,447	134	322
서울	8,119	6,289	12	1,706	21	91
인천	4,539	3,616	3	903	10	7
경기	22,950	18,353	23	4,485	26	63
부산	5,596	4,467	10	1,106	3	10
대구	3,734	2,961	2	738	15	18
광주	2,451	1,805	1	643	2	-
세종	578	463	-	113	2	-
대전	2,419	1,832	2	566	7	12
울산	2,262	1,814	2	442	-	4
강원	3,239	2,539	3	655	7	35
충북	3,104	2,488	-	604	1	11
충남	4,725	3,984	3	729	4	5
전북	3,764	2,967	2	785	4	6
전남	3,967	3,125	3	823	3	13
경북	5,543	4,335	4	1,160	21	23
경남	7,213	5,548	3	1,633	8	21
제주	1,365	1,006	-	356	-	3